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995. 12.

교육사회위원회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5년 12월 19일
- 회부일자 : 1995년 12월 19일

3. 제 안 이 유

-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의 개정(1995. 2. 28, 대통령령 제14,543호)으로 시·도교육청의 과장급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의사국의 국·과장 직급을 도교육청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 교육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국내 하부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주 요 골 자

- 의사국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조정함
- 의사과장의 직급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조정하고 그 밑에 의사계장과 의안계장을 두되 의사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의안계장은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4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함

5.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영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전국 교육위원회 의장단 회의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교육부와의 협조가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시대의 정착과 더불어 교육자치의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관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의 정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승인여부에 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6. 개정 조례안 : 별첨